

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(4)6

제출년월일 : 1998. 11.
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사유

기금관리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관계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 또는 신설하여 기금운용, 관리의 본래을 수행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, 관리도록 개정
-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수립도록 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
-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
- 용어의 정리

3. 근거법령

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

- 붙임 1.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,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의 "기금관리계획"을 "기금운영계획"으로 한다.

①기금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.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③시장이 수립한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2항중 "농촌지도소장"을 "농업개발센터소장"으로 "주무계장"을 "주무담당주사"로 한다.

제1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

①제천시 농촌지도자회장, 제천시생활개선회장, 4-H후원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기금운용관으로 결산보고서를 취합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○ 자치법규명 : 제천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기금의 구분관리) ①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</p> <p>②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% 이상을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기금의 구분관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,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기금의 관리계획) ①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기금관리계획</u>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방법 2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	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)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.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기금운용계획</u>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(현행과 같음) 2.(현행과 같음)
<p>신 설</p>	<p>③시장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13조(회계관리) ①(생 략)</p> <p>②기금관리운영은 <u>농촌지도소장</u>으로 출납원을 주무계장으로 한다.</p>	<p>제13조(회계관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관리운영은 <u>농업기술센터소장</u>으로 출납원은 주무담당주사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사업계획 및 예산결산)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천시 농촌지도자회장, 제천시 생활개선회장, 4-H후원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기금관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기금결산) ①제천시 농촌지도자회장, 제천시 생활개선회장, 4-H후원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결산보고서를 취합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><삭 제></i></p>